

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다만, <u>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(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)</u> 및 주식관련파생상품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)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 3. ~ 9. (생략) 	<p>제18조(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)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채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 이하로 한다. 다만, <u>주식에의 투자는 집합투자증권</u> 및 주식관련파생상품(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기준)과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이하로 한다. 3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<p><u>부칙</u> 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1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</p>